

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안내

□ 지원대상: 슬레이트 건축물(주택, 창고, 축사,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) 소유자

※ 임차인의 경우 건축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 가능

□ 지원범위 및 금액

○ 주택 철거·처리

- 취약계층: 1동당 전액 지원
- 일반가구: 1동당 352만원 범위내의 소규모 주택을 우선지원하고, 최대 7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

○ 창고, 축사,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철거·처리

- 1동당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㎡ 이하 지원(소규모 우선)

○ 주택 지붕개량

- 취약계층: 1동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전액지원
- 일반가구: 지자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원여부는 지자체별로 상이하나, 지원하는 경우 1동당 3백만원 범위내의 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하고, 최대 5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

※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 가능하여 지원금액·범위 등은 지역여건에 따라 상이함

※ 지자체가 선정한 공사업체(철거·지붕개량)를 통해 공사비 지원

☞ 지원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

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관할 지방자치단체(시·군·구청 또는 읍·면·동 사무소)

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 절차

